

법제처, 법제 업무로 빛은 적극행정 성과 8건 선정

- 해수욕장 알박기 텐트 제거 근거 마련,
국가배상액 산정 기준상의 차별 정비 등 적극행정 법제 사례 공유 -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23년 적극행정 법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올해 법제처가 선정한 법제 분야 적극행정 우수 사례 8건을 담당하는 7개 기관의 담당자들과 적극행정 제도를 총괄하고 지원하는 인사혁신처·국무조정실·행정안전부·감사원의 담당자들이 각각 참석했다.

* 해양수산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법제처는 지난 2020년부터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의 활성화를 위해 법령의 입안·정비 및 해석 등 법제 업무 분야에서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천한 적극행정 법제 사례를 매년 발굴해 왔다.

올해는 53개 기관에서 실천한 총 230건의 적극행정 법제 사례를 발굴했으며, 법제처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건을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

< 2023년도 적극행정 법제 우수 사례 8건 >

연번	유형	기관	사례명
1	법령입안	질병청	제4급감염병의 분류를 탄력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
2		식약처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리할 수 있는 수입신고의 대상을 원칙적으로는 수입을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수입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규정
3		해수부	관리청의 직접 제거 대상이 되는 해수욕장 구역 내 무단 설치·방치 물건의 범위를 조례로 위임

연번	유형	기관	사례명
4	법령 정비	고용부	발파작업 안전 관련 낡은 규제 개선
5		식약처	음식점 옥외 영업장의 조리행위 원칙적 허용
6		국토부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 완화
7		법무부	국가배상액 산정 기준상의 차별 해소
8	법령 해석	기재부	체인사업자의 신규 주류 물류센터 면허 취득 요건의 합리화

※ 붙임: 2023년도 적극행정 법제 우수 사례 주요 내용 참조

간담회 참석자들은 적극행정 법제를 활용하여 법령을 입안·정비·해석한 사례의 배경 및 성과, 추진 과정에서 겪은 경험 등을 공유하는 등 적극행정의 현황과 향후 과제 등을 논의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겪는 크고 작은 불편을 해소하고,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일선 공직자들이 적극행정 법제를 보다 폭넓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법제처는 앞으로도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법제정책총괄과	책임자	과장	최성희	(044-200-6561)
		담당자	사무관	김치영	(044-200-6565)



기 관	주요 내용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 총괄과)	< 법령입안 - 분류체계 유연화 > ▪ 제4급감염병의 분류를 탄력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 - (문제점) 제4급감염병은 법률에 명시된 감염병에 한정되어 코로나19와 같이 감염병의 심각도와 전파력이 낮아진 경우에도 법정 감염병 급수 조정을 위하여 법률 개정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 탄력적인 감염병 관리정책에 장애로 작용 - (입안내용) 상황에 따라 탄력적이고 신속한 감염병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제4급감염병에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이 포함되도록 분류체계를 유연하게 개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식품의약품 안전처 (수입식품 정책과)	< 법령입안 - 원칙허용 예외금지 방식 > ▪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리할 수 있는 수입신고의 대상을 원칙적으로는 수입을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수입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규정 - (입안배경) 수입신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 건강에 미치는 위해의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수입 식품등의 경우에는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되면서 그 대상은 하위법령인 총리령에서 정하도록 위임 - (입안내용) 법률의 위임을 받아 정하는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리할 수 있는 수입신고 대상'을 원칙허용 예외금지 방식으로 입안(「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제1항)
해양수산부 (해양레저 관광과)	< 법령입안 - 하위법령 활용 > ▪ 관리청의 직접 제거 대상이 되는 해수욕장 구역 내 무단 설치 · 방치 물건의 범위를 조례로 위임 - (문제점) 최근 해수욕장 시설 내 야영 및 취사용품 등을 장기간 설치·방치에 따른 국민 불편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해수욕장 관리청이 필요시 무단 설치 또는 방치된 물건 등을 직접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입안내용) 법률의 위임을 받아 해수욕장 내에 무단 설치 또는 방치되어 해수욕장 관리청이 긴급하게 직접 처리해야 하는 물건등의 종류를 명시하면서 관리청이 해수욕장의 이용·관리에 지장이 있는 물건도 조례로 정하여 직접 제거할 수 있도록 개정(「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호)

기 관	주요 내용
고용노동부 (건설산재 예방정책과)	< 법령정비 - 국민불편 법령 정비 > ■ 발파작업 안전 관련 낡은 규제 개선 - (문제점) 종전 지침을 1994년에 제정한 후 주요 내용에 변화가 없었던 반면 발파방법 및 관련 기술 등이 개발·보급되어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실과의 괴리 해소 필요 - (정비내용) 현장에서 쓰이지 않는 '도화선발파' 등 낡은 규정을 삭제하고, 비교적 안전한 발파방법인 '비전기발파', '전자발파' 사용에 관한 안전기준을 담은 규정 신설(「발파 표준안전 작업 지침」 전부개정)
식품의약품 안전처 (식품안전 정책과)	< 법령정비 - 국민불편 법령 정비 > ■ 음식점 옥외 영업장의 조리행위 원칙적 허용 - (문제점) 관광특구지역 또는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장소의 경우 지자체 재량으로 옥외 조리 영업을 허용했던 종전 규정은 특정 장소에 대해서만 조리행위를 허용하고 있어 특혜소지 및 규제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적은 장소의 경우에도 조리행위가 원칙적으로 불가하여 규제 합리성 면에서도 한계가 있었음 - (정비내용)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관광특구 지역이 아닌 경우에도 주거지역과 인접하지 않아 환경 위해 우려가 적은 지역에서는 식품접객업자가 건물 외부에서 조리·제조한 음식을 건물 외부의 영업장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함(「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 법령정비 - 국민불편 법령 정비 > ■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 완화 - (문제점) 최근 급증한 택배수요에 따른 내부시설 및 종사자 증가 등을 고려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고가도로 노면 하부 및 도시 철도 차량기지에 허용되는 택배화물 분류 시설에 사무·휴식·관리 창고 등 시설 운영에 필수적인 관리용 가설건축물 확충 필요 - (정비내용) 개발제한구역 내 택배화물 분류 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관리용 가설건축물의 규모를 200㎡까지 확대하고, 생활 물류서비스 확대 추세를 감안하여 시설규모에 비례하여 추가 설치도 가능토록 함으로써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의 근무환경을 개선(「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기 관	주요 내용
법무부 (국가소송과)	< 법령정비 - 차별법령 정비 > ▪ 국가배상액 산정 기준상의 차별 해소 - (문제점) 재판 및 국가배상심의회에서 국가배상액 산정시 병역 의무 대상인 남성의 경우, 그 복무기간을 일일이익 계산을 위한 취업가능기간에서 제외하고 있어 동일한 사건으로 사망 또는 상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피해남학생들의 군복무 예정 기간이 취업가능기간에서 제외되면 피해여학생들에 비하여 배상금이 적게 책정되는 불합리한 결과 발생 - (정비내용) 취업가능기간에서 제외되던 '군 복무 가능성이 있는 남성'의 군복무기간을 취업가능기간에 전부 산입하도록 개정하여 차별적 요소 개선(「국가배상법 시행령」 제2조)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 세제과)	< 법령해석 - 수익요건 축소 해석 금지 > ▪ 체인사업자의 신규 주류 물류센터 면허 취득 요건의 합리화 - 편의점 본사와 같은 체인사업자는 신규 물류센터 설치 후에도 실무적인 면허발급기간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9개월 간 주류 취급을 할 수 없어 비효율적 물류처리에 따른 규제비용 발생함에 따라 해당 요건은 면허 취득을 위한 수익 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축소해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 부실한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막기 위한 요건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체인 사업자가 소속 가맹점의 증가로 물류센터를 분리·신설하려는 경우에는 기존 물류센터의 상품 공급실적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적극행정 법제에 따른 해석의 취지대로 관련 조문 개정(23. 2월)